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2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2월 5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장

1. 제안이유

「소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소방기본법」의 개정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이 국가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, 소방 관련 기구의 직제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행정2부시장 소속의 행정기구인 소방재난본부를 시장 직속으로 변경함 (안 제4조 및 제5조의2)
- 나. 서울특별시 소방학교, 119특수구조단, 소방서 주소지를 현행화하여 정비함(안 제41조, 제47조 및 별표1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, 제9조, 제9조의2 및 제21조, 「소방기본법」 제3조의2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
 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 - (2) 입법예고(2020. 1. 16. ~ 1. 20.) 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물순환안전국, 소방재난 본부를”을 “물순환안전국을”로 한다.

- ① 서울특별시시장 밑에 기획조정실과 소방재난본부를 두고, 기획조정실은 서울특별시의 주요정책을 수립·조정하며, 조직관리·예산·법제·재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,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예방·진압과 재난·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·구급 활동 수행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.

제19조의2 및 제20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5조의2로 한다.

제41조제2항 중 “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29(서초동)”를 “은평구 통일로 1031-25(진관동)”로 한다.

제47조제2항 중 “중구 퇴계로 26길 52(예장동)”를 “은평구 통일로 1031-21(진관동)”로 한다.

별표 1의 제목 중 “(제35조제2항 관련)”을 “(제37조제2항 관련)”으로 하고, 같은 표 강북소방서의 위치란 중 “보건소길 2”를 “한천로 911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41조(설치) ① (생략)</p> <p>② 소방학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29(서초동)에 둔다.</p> <p>제47조(설치) ① (생략)</p> <p>② 특수구조단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(예장동)에 둔다.</p> <p>[별표 1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방서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(제35조제2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명칭</th> <th style="width: 45%;">위치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관할구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강북소방서</td> <td>서울특별시 강북구 <u>보건소길 2</u>(번동)</td> <td>강북구 일원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명칭	위치	관할구역		(생략)		강북소방서	서울특별시 강북구 <u>보건소길 2</u> (번동)	강북구 일원		(생략)		<p>제41조(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은평구 통일로 1031-25(진관동)</u>-----.</p> <p>제47조(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은평구 통일로 1031-21(진관동)</u>-----.</p> <p>[별표 1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방서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(제37조제2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명칭</th> <th style="width: 45%;">위치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관할구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강북소방서</td> <td>----- <u>한천로 911</u>-----</td> <td>강북구 일원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명칭	위치	관할구역		(현행과 같음)		강북소방서	----- <u>한천로 911</u> -----	강북구 일원		(현행과 같음)	
명칭	위치	관할구역																							
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
강북소방서	서울특별시 강북구 <u>보건소길 2</u> (번동)	강북구 일원																							
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
명칭	위치	관할구역																							
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
강북소방서	----- <u>한천로 911</u> -----	강북구 일원																							
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▶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⇒ “비용을 수반하는 의안”에 해당하지 않음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기존 행정기구의 소속을 변경(행정제2부시장 소속 → 시장 직속)하는 것으로,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

4. 작성자 :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문제호(☎ 2133-6724)